삼정 KPMG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4, 2024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가격

#### 영국: 가을 예산안 발표, 필라 2 세제 조치 포함

2024 년 10 월 30 일, 영국 재무장관은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관련된 다음 조치들을 포함하는 2024 년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영국 정부는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을 2024-2025 회계연도 재정 법안에 포함하여, 2024 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최신 국제 동향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영국의 다국적 기업 및 국내 추가세액(top-up tax) 관련 법안에 다양한 기술적 개정 사항이 추가됩니다. 대부분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지만, 일부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영국 정부는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경과 CbCR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ountry-by-country (CbC) reporting safe harbors)와 관련하여 차익 거래 방지 규정을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EU: 회원국 간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정보교환 개정안(DAC9)

2024 년 10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간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9)을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DAC9 는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EU 법으로 이행하고, GIR을 EU 최저한세 지침 제 44 조에 명시된 추가세액 신고서로 지정하며, EU 회원국 간 GIR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이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GIR 정보 교환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직 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구 10013 (2024.09.10)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적재산등을 활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일반특수강·스텔레스·기타 철강제품 제조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경북 구미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주식회사 B 등으로부터 원재료인 코일철판을 매입하여 절단 및 코팅 등 가공공정을 거쳐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 등에 IT·영상 가전 원소재용 철강소재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미국 및 멕시코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2018 년 4월 미국 소재 국외특수관계법인인 A(이하 "미국현지법인")와 2018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①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적재산(노하우, F·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받은 순수익의 2.5% 또는 ② 청구법인이 개발한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지급받은 이자 및 세금 전 수익의 최소 20%를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용권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이후로 쟁점계약 상 로열티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2023.6.7. 청구법인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0.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상 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법인 주장

- 1.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은 영위하는 사업부문 및 취급제품이 전혀 다르고, 미국현지법인은 특허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매우단순 한 가공을 하거나, 롤포밍(Roll Forming)이라는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제공하는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 청구법인은 철강원자재에 표면처리를 한 가전 용 칼라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반면, 미국현지 법인은 원자재를 단순 절단한 냉연도금강판을 판매하여 그 영업이 전혀 다르고 자체개발한 성형공법으로 차량용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 하고 있음
- 미국현지법인의 거래는 주로 최종 고객이 승인한 철강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① 프레스업체가 요청하는 규격대로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단순 가공거래와 ② 미국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설치한 설비를 사용하여 롤포밍(Roll Forming)이라는 성형공법을 통해 차량 트레일러용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거래임
-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롤포밍 관련 사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고, 미국현지법 인이 보유하고 있는 롤포밍 설비의 개발, 설치, 시운전, 자재 구매비용 집행은 전적으로 미국 현지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음
- 또한 미국현지법인은 단순 원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기계로 원자재인 코일을 절단하기만 하는 매우 단순한 작업으로 특별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전혀 요구되지 않으며, 이처럼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 속한 I, J, K, L 등 감사보고서 주석상 해외 M\*로부터 로열티 수수하는 거래는확인할 수 없음
  - \* 기계장치와 설비를 가지고 철강판이나 후판을 절 단해서 공급하는 회사

#### 처분청 주장

-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상 로열티를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로 미회수하였고, 쟁점계약상 로열티 지불의무 면제조항은 이미 발생한 채무를 사후에 면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 쟁점계약에 의하면 미국현지법인은 미국현지 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적재산(노하우, F·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 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받은 순수익의 2.5% 를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함에 도 청구법인은 2018년 이후 미국현지법인으 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에 관한 권리의 무 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계약상 청구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해당 로열티채권을 회수할 권 리가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로열티 미수취에 대한 합리 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로 해당 채권을 미회수(혹은 계약에 따른 채권 포기)하였음
- 쟁점계약 체결 당시인 2018년 4월 당시 미국 현지법인은 멕시코현지법인의 신규공장 설치 과정에서 설비자산을 과다 계약함에 따라 은 행대출액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쟁점계약상 로열티 채권을 임의로 미 회수한 것으로, 채권 미회수가 쟁점계약상 로열티 지불의무 면제조항에 따른 미국현지법 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채무를 사후에 면제 한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조건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매우 이례적 인 조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

- 대법원은 계약상 수취권리가 있는 채권의 임의포기 행위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대법원 2022.1.2. 선고 2021두50857 판결,대법원 2020.3.26. 선고 2018두56459 판결)하고 있음

#### 2. 쟁점 계약상 열거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법령상 무형자산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 현지법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창출된 수익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 계약상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3 제1항에서 '무 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으로 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 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 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특허권, 상 표권,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고객망, 영 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쟁점계약상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허여한 지적재산권이란 '특허, 저작권 및 이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등록권, 영업비밀권리, 상표, 노하우, 기밀정보 및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독점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타 유사한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 1) 미국현지법인은 매입한 원자재를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므로 청구법인의 특허나 노하우를 이용하지 않고, 롤포밍 가공작 업은 미국법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설치한 설비이므로 청구법인 보유 특허 나 노하우와 전혀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저작권도 있지 아니함
  - 2) 조세심판원은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하여 단순 배합 작업만을 거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

#### 2. 청구 법인은 쟁점 계약상 지식 재산권을 미국 현지법인에 제공하였음

-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비즈니스 관계 (거래관계 및 영업권), 노하우(설비운영, 인사관리), 상표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 및 접근권한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무형자산은 쟁점계약상 지식재산권 중 영업비밀권리, 상표, 노하우, 기밀정보에 해당함
- 1) 대기업의 해외진출 시 해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해외 진출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부 납품 물량을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임. 멕시코현지법인 설립 직후인 2012년 미국현지법인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현지법인의설립 및 매출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비즈니스 관계의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2)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 설립 시점 인 2012년 이전부터 C의 협력 프레스업체 인 주식회사 N (해외현지법인 'O' 포함)와 국내외 거래가 있었고, 2011년에는 F에 OOO억원 규모의 직수출거래가 있었음. 그러나 미국현지법인이 설립된 2012년 이후 기존에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던 G 관련 거래처인 F 등과의 거래가 단절되었고 이후 체결된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 간 쟁점계약상 F 등에 대한 매출액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F 등에 대한 영업권을 미국현지법인에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직접적인 판매권의 이전행위로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가 미국현지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됨
- 3) 청구법인과 미국, 멕시코 소재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

는 법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 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 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모법인에 로열티 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조심 2013서4296, 2018.5.31.), 미국현지 법인은 주로 B2B 거래를 영위하는 업체 로 최종 고객사에서 승인한 철강 브랜드 의 원자재를 저가로 구매하는 것이 수익 성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이지 미국 내 인지도가 낮은 청구법인의 상표나 브 랜드가 미국현지법인 수익성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아니하고, 결국 미국현지법 인의 상표 사용은 그룹사를 나타내는 수 준에 불과함

- 3) 미국현지법인 핵심활동은 생산기술이 아 닌 원자재의 저가매입과 영업활동(고객 관리)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노 하우와 무관하고 미국현지법인 채용인원 중 청구법인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없고, 미국현지법인의 공장설계와 설비구매는 미국현지법인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제공한 노하 우, 지식, 방법론, 프로세스 등이 없음
- 3. 설령,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3. 청구법인은 2018 년 이전 수취한 로열티에 로열티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쟁점 로열티의 정상가격을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쟁점 로열티 계약서만을 근거로 곧바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는 청구법인과 미국 현지법인의 법인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처분이 필요하며, 궁극적 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별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와 의 거래관계를 활용하여 신규시장에 진출 하기 위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납품 요구사양 및 품 질, 단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설비 및 운영의 주요 노하우 가 이전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바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 법인 장 등 주요 임직원의 채용, 교육, 성과평가, 파견업무 등을 수행하여 미국현지법인에 인사 및 교육 등의 노하우를 제공한 것으 로 확인됨
-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기업이미 지를 미국현지법인 및 멕시코현지법인의 공장 외부, 업무문서 등에 사용 가능하도 록 제공하였음

- 대하여 해외소득을 국내로 회수하기 위해 작성한 허위문서를 근거로 수취할 권리가 없는 허위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
- 4. 또한, 국외특수관계인 간 이전가격에 대한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게 비즈니스관계, 노하우, 상표에 대한 사용 및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쟁점계약상 기재된 지식재산권(IP)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법인에 쟁점계약상 지식 재산권을 제공하였고, 쟁점계약대로 로열티 수취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이 쟁점계약상 로열티 면제조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 로서 이미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를 사후 에 임의로 면제한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4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 52 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4) 판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쟁점계약상 지식재산권을 제공하였고 쟁점계약대로 로열티 수취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미수취하였다는 전제 하에「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미국현지법인의 이익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년당시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Q 본인의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은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2016년 및 2017년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문답서,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현재 청구법인 경영전략부문(세무/회계업무 담당)최고책임자인 Q는 2024.7.9. 개최된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조사당시 쟁점계약의 진위 여부에 대해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만약 쟁점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상 로열티 수취의무를 인정할수 없을 것이므로,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 간 체결된 쟁점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조사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설령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쟁점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쟁점계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산정된 정상가격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계약은 ①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적재산(노하우, Fㆍ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받은 순수익의 2.5% 또는 ② 청구법인이 개발한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지급받은 이자 및 세금 전 수익의 최소 20%를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기업의 브랜드 로열티 수수료율은 관련 매출액의 약 0.2% ~ 0.5%로 나타나는 바 쟁점계약상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적용

#### 이차전지·전기차 소재·부품 수출통관 상품코드 신설

출처: 한국세정신문

#### 1. 개정 내용 및 적용 시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HSK 는수출입 통관 시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10단위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HSK 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신고 시 새로운 코드 체계를 숙지해야 하며, 이전 코드가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까지 기존 HSK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통관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개정 배경 및 목표

이번 개정의 주요 목표는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코드가 신설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성장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수소연료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코드도 신설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한국의 산업 구조를 현대화하고,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3. 개정 내용

이번 HSK 개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코드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그리고 국내산 민어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에 대한 신규 코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같은 독성 살충제에 대한 세분화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신고 오류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를 부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며,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의 오류도 교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통관 절차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먹거리 안전 강화:

•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코드 신설.

-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코드 신설.
- 국내산 민어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는 남방 먹조기 및 점성어 코드 신설.

####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 코드 신설.
- 독성 살충제 포레이트(ISO) 세분화 관리.

#### 기업 부담 경감 및 오류 방지:

-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 부합 조정.
-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의 오류 교정.

### **Key Contacts**

####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u>백승목 전무</u>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u>김태주 전무(관세)</u>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hbox{@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